

# 傳記分類의指針(下)

李丙洙

國會圖書館圖書課司書官補

## 書簡

書簡은 (1) 私的內容의一般的인것, (2) 한 주제를 中心으로 하는個人의書簡, (3) 世襲統治者의 것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가) 私的인辭緣의一般的的書簡으로 두 사람 사이의 往復書翰은 標題紙에 나타난最初의 사람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나) 그러나 後者가 特히 儲出한 사람인 경우는 後者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다)個人의書簡은 그 사람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라) 文學者(男·女)의書簡集은 文學者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代法: 文學者의書簡集은 그著作과 함께 分類한다(Merrill).

N.D.C.는 文學者의書簡은 文學(900)아래의書簡(915)에 分類한다.

(마) 天皇·王·其他 世襲的統治者的書簡은 統治者의 傳記를 歷史와 함께 分類하는 곳에서는 그 治世와 歷史아래 넣는다.

(바) 統治者的傳記를 歷史아래 分類하지 않는 경우는 傳記아래 分類한다.

(사) 한 주제를 中心으로 한個人의書簡은 그 주제아래 分類한다.

## 日記

(가) 公事에 關한 日記는 그 주제아래

分類하고 그著者의 傳記아래 넣지 않는다.

(나) 한 戰爭中, 歷史의 한 時代, 한 地方의 事件을 記載한 日記는 각각 그 戰爭 時代, 地方의 歷史아래 分類한다.

例를 들면 <包圍당한 파리市民의 日記> <파리包圍>아래 分類한다.

(다) 한 時代의 歷史·禮儀·慣習을 例證하는 日記는著者가 그時代의 儲出한人物이면 그著者の傳記아래 分類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時代나 주제아래 分類한다.

(라) 文學者의 日記는 그傳記아래 分類한다.

代法: 文學者의 日記는 그著作과 함께 分類한다.

(마) 記載함이 多樣하며 또한 全生涯에 미친 日記는 그傳記아래 分類한다.

(바) 世上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日記로 特히 주제나當時를 說明하기 爲해서 出版된 資料는 그 주제아래 分類한다.

(사) 한 戰爭, 한 政治運動 또는 文學同人等에 關한 日記는 그 주제아래 分類한다.

그러나著者가 그事件에서의 儲出한 行動者이면 그傳記아래 分類한다.

後者の 경우는 分類表에 따라서는 그주제아래에 細區分에 依해서 傳記를 設置하

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D. D. C. 16版 南北戰爭아래의 個人이야기와 같이 本主題에 細目이 設定되어 있지 않으면 傳記아래 分類한다.

(아) 個人的 日記로서 그 生活記錄의 資料로서 보다도 日記文으로서의 價値가 더 認定되는 것은 文學아래 分類한다.

위의 書簡이나 日記의 分類規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傳記에 分類할 수 있는 日記나 書簡은 그 사람의 生涯에 關한 것이 되 文學的 要素가 짙지 않은 것이며 그 日記나 書翰이 文學的으로 더 높은 價値가 있는 것은 文學아래 分類한다.

#### 個人意見

(가) 한 有名人士의 個人的인 印象이나 意見을 다룬 著作은 그 人士의 傳記에 分類한다.

(나) 한 主題에 關한 著者의 觀點은 그 主題아래 分類한다.

(다) 한 사람의 意見書는 特別한 主題를 다룬 경우를 除外하고는 關聯된 사람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 會見記·談話記

(가) 有名人士나 傑出한 人物과의 會見記나 雜談錄은 會見의主旨가 主題를 말하는 點에 있으면 그 主題아래 分類한다.

그러나 그主旨가 個人을 主로 하여 談話者가 實際上의 主題가 될 수 있는 程度면 그 個人아래 分類한다.

(나) 會見의主旨가 會見된 人物을 主로 하여 그 사람의 人格·生涯·個性·職業 및 著作等이 主題로 되는 것은 會見된 人物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 影響關係

(가) 한 個人이 어떤 事件이나 制度에 對해서 影響을 준 것으로서 그 影響을 받

은 要素가 뚜렷하고 特殊치 않으면 그 個人の 傳記아래 分類한다.

(나) 한 個人의 影響이 特定主題에 限한 著作은 그 主題아래 分類한다.

예를 들면 <죠오지六世가 英國憲法發展에 준 影響>은 <英國의 憲法史>에 分類한다.

(다) 한 사람이 他人에게 준 影響을 다른 著作은 影響을 받은 사람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 宗教人의 傳記

(가) 開宗者傳記

한 宗教의 開祖의 傳記는 그 宗教와 함께 分類한다.

한 宗教의 初期歷史는 開祖의 傳記와 区別이 難하다. 이 規定은 主題에 따라서 傳記를 分類치 않는 圖書館이라도 適用해야 한다.

舊 K. D. C.는 宗教開祖(釋迦·예수)는 각 그 宗教에 그리고 宗教人의 傳記도 宗教 아래 分類하며 D. D. C.는 宗教(200) 아래 예수·그리스도(232.9)를 設定하고 宗教의 指導者는 傳記아래 分類하며 N. D. C.는 各宗教宗派에 各派의 開祖에 對應標目이 設置되었다.

(나) 布教師·傳道師의 各位

傳道·布教師를 主題에 따라서 分類하는 경우는 그들이 提携한 傳道分野와 함께 分類한다.

예를 들면 律宗, 華嚴宗, 天臺宗, 真宗等의 各布教師는 各各 律宗, 華嚴宗, 天臺宗, 真宗에 分類한다.

(다) 改宗者

改宗者의 傳記는 改宗한 그 個人の 改宗過程을 다룬 著作은 改宗한 最後의 宗教에 分類한다.

## (라) 宗教人の 他分野

한 종교나 宗派의 한 사람으로 宗教分野 以外의 한 분야에 貢獻한 사람은 그 主題의 傳記에 分類한다.

例：美陸軍의 大將(天主教人)은 D. D. C. 923, 573.

## 婦人傳記

(가) 特殊分野에서의 顯著한 業蹟 또는 活動을 記述한 婦人의 傳記는 그 業蹟이 나타난 主題分野에 分類하고 一般傳記 또는 婦人傳記아래 넣지 않는다.

舊 K. D. C는 世界婦女叢傳(250.1)만을 區別하고 그外는 男子의 傳記와 같이 分類하여, D. D. C.는 明白히 어떤 特殊主題에 貢獻치 않은 婦人傳記는 920.7에 設定하고 N. D. C.에서는 婦人의 叢傳(總傳)은 280.9에 日本婦人叢傳은 281.09에 設置하고 있으며 어느 主題에 貢獻한 것이 뚜렷하면 그 主題에 分類한다. 例를 들면 <近代日本婦人文藝作家群>하면 281.09(日本婦人叢傳)이 아니고 日本文學아래 分類한다.

(나) 有名한 사람(王·將軍等)의 妻는 그 婦人의 傳記에 分類하고 有名人士의 傳記에 넣지 않는다.

## 奴隸의 傳記

(가) 奴隸의 生涯로 奴隸階級의 狀態를 例證하는 것을 目的한 著作은 奴隸(例：奴隸制度資料 D.D.C. 326, N.D.C. 362.03)아래 分類하고 傳記아래 分類하지 않는다.

(나) 奴隸解放後 有名하게 된 奴隸의 傳記(例：Booker Washington傳)는 傳記아래 分類한다.

## 傳記 對 著作

(가) 著者의 傳記가 主고, 그 著書가 副인 著作은 그 傳記아래 分類한다.

(나) 著作이 主고, 傳記가 副인 著作은 그 著作의 主題아래 分類한다.

(다) 拔萃한 著作을 包含하는 著者的 傳記는, 그것이 보다 主要하다고 認定되는 쪽에 分類한다.

## 傳記 對 地方

(가) 한 國家와 한 外國統治者 사이에 行한 關係를 다른 著作은 外交史아래 分類한다.

이 規程을 밀받침하는 것은 統治者는 그 나라의 代表者로서의 行爲가 主要要素가 되고 個人的 要素는 副가 되기 때문이다.

(나) 한 人物과 몇 개 人物과의 關係가 있는 한 地方에 對한 著作은, 그 人物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그러나 著者의 意圖가 史蹟을 다른데에 있는 것은 史蹟으로 보고, 分類表의 組織에 따라 歷史 또는 地誌아래 分類한다.

(다) 한 著者를 中心으로 한 長期間에亘한 여려가지 事件을 包含한 이야기는 그 사람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大概 이러한 話題는 著者が 主役이며 同時に 傍觀者인 人物에 依해서 쓰여지므로 그 主要點은 傳記가 된다>(Merrill)

(라) 한 戰爭 또는 其他 特殊事件에 對한個人의 이야기는 事件의 歷史에 分類한다.

例를 들면 <南北戰爭時의 少年鼓手의 追憶>은 D.D.C. 15版 973.7; 16版 973.78에 分類한다.

## 傳記 對 事件

傑出한 人物이 한 事件이나 여려 事件에 關與한 役割을 다른 著作은 興味의 對象이 그 事件과 關係없이 그 사람自身에게 있는 것이면 傳記에 分類한다.

## 傳記 對 主題

(가) 한 사람이 傳記와 主題와의 区別이 疑問되는 경우는 傳記아래 分類한다.

(나) 한 作家의 作品의 拔萃가 따르는 傳記는 그 顯著한 特性에 따라서 傳記아래나 主題아래 分類한다.

對煙 : → 傳記 對 著作 (다)

(다) 著者의 生涯와 著作을 包含할 때는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

(1) 著者의 生涯가 副 일 때(例: 여려 권으로 된 한 帚中의 한 卷)는 著作아래 分類한다.

(1)生涯와 著作이 서로 짜였거나 著作이 全體가 아니라 部分的으로 흩어진 것이 있는 著作은 傳記아래 分類한다.

## 言行錄

그 記述이 時代의 歷史나 特殊主題로서決定的으로 主要치 않으면 傳記아래 分類한다.

## 家傳

(가) 皇室總傳은 分類表의 組織에 따라서 家傳(皇室) 또는 一般總傳아래 分類한다.

D.D.C. 15版은 927.7, 16版은 927.72에 歐洲의 皇室, 927.7999에 그 以外의 皇室을 分類하고 地理區分을 한다. N.D.C.는 288.4에 分類한다.

(나) 著名한 人物의 記述을 包含한 數世代에 亘한 家傳은 家傳아래 分類한다.

(다) 著名한 人物의 傳記로 그 家族의 記述을 包含한 著作은 그 人物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라) 上記 (가)(나)을 通해서 判斷上疑心이 있는 경우는 三代以上에 對해서 또는 應分의 길이가 있는 것만을 家傳으로서 分類한다.

(마) 戶籍記錄 또는 寺院·敎會에서 記載한 出生·結婚·死亡의 登錄 또는 이것들의 內容에서 되는 記錄은 家傳 또는 地方史아래 分類하고 戶籍行政이나 寺院等에 넣지 않는다. (Merrill)

(바) 한 家族中의 몇 사람의 藝術 또는 文學作品은 藝術 또는 傳記아래 分類한다.

## 家傳 對 地方史

(가) 한 地方의 歷史와 그 地方의 定着民의 系譜를 함께 다룬 著作은 地方史에 分類한다.

(나) 大部分이 家族의 歷史로 차 있는 地方史는 系譜에 分類한다.

## 家傳 對 宗教團體

(가) 같은 宗教徒(例: 유고노敎徒)의 總系譜는 그 宗教徒의 系譜에 分類한다.

(나) 같은 宗教信者가 定着한 地方이나 都邑의 總系譜는 그 地方의 系譜아래 分類한다.

## 系譜 對 政治史

公事에 關係한 一家族의 歷史는 系譜에 分類한다.

對煙 : → 傳記 對 事件

## 地主

한 地方의 土地所有者 및 戶主名簿는 傳記아래 分類하지 않고 地方의 歷史아래 分類한다.

이런 것들은 大概가 歷史的인데 그 興味가 있는 것이다.

## 地名 及 家族名

한 地方 한 地名과 家族名으로 된 著作은 地方의 系譜나 地方의 歷史아래 分類한다.

## III. 結語

以上으로 傳記分類의 實際에서 疑心스

더운 것을 Merrill 等의 分類規程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에서 現在 使用하고 있는 各種分類表에서 適用할 수 있게一般的通用性을 考慮하여 分類規定을 試圖하여 보았다. 分類規程이란 것은 各館의 特性에 알맞게 分類表를 運用하기 為한 하나의 分類表運行法이며 圖書內容의 類型에 따른 取扱上의 便法이나 分類表를 自館에 알맞게 適用함과 함께 分類規程의 決定도 自館의 地域地會에서 處한 特殊性을 考慮해서 定하는 以上 he 어떤 點은 他館과 다른 規程도 할 수 있다.

自己 圖書館에서 使用하고 있는 分類表

를 充分히 理解하고 그것의 組織上의 混亂을 갖어오지 않고 또一般的으로 普遍化된 分類規程을 常識以下로 無視해 버리지 않는 程度로는 自館의 分類를 始終一貫統一하기 為하여서는 分類作業上의 約束인 分類規程을 確立해야 한다.

Bliss 같은 사람은 分類規程의 成文化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時代에 따라 變할 規程의 流動性을 認定해서고 사람의 記憶이란 限定이 있고 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規定을 記錄化하는 것은 꼭必要하다.

(註)

學術活動의 열쇠! —研究와 調查活動의 情報源—

## 學術雜誌索引 1960

1960年度 國內에서 發刊된 學術雜誌 論文 10,240篇의 記事を 索引하여 收錄한 우리나라 初有의 綜合的且 定期刊行物의 索引集이다.

<模造洋裝 4.6倍版 414面 廿 會員 800원, 非會員 950원, 外國 12弗>

## 學術雜誌索引 1961~1962

1961~1962年에 國內 學術雜誌 353種에 發表된 19,282篇의 論文을 索引하여 著者名과 主題名을 混合配列

<模造洋裝, 4,6倍版 790面 廿 會員 2,000원, 非會員 2,5000원 外國 20.00 \$>

教育機關, 各級學校, 會社, 圖書館, 研究機關, 學術研究家에게 必備의 圖書.

注文接受: 7月 25日限 (別添 注文書 및 振替用紙를 利用하시오)

配 本: 注文書接受 即時로 送付해 드립니다.